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	1997년	5월	27일	조례 제 457호	
개정	1998년	10월	14일	조례 제 506호	부칙
개정	1999년	10월	1일	조례 제 565호	
개정	2001년	8월	21일	조례 제 683호	
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 687호	부칙
개정	2002년	12월	4일	조례 제 731호	
개정	2003년	6월	3일	조례 제 745호	
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 975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8년	7월	24일	조례 제 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타법규개정	2013년	1월	12일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6월	10일	조례 제129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10>

1.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1>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주무 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9. 10. 1>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교육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8. 21, 2008. 6. 13>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개정 2001. 8. 21>

제11조 삭제 <2001. 8. 21>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에 대한 소비자시책에 관한 건의 <개정 2001. 8. 21>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 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10. 1>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10. 1, 2013. 6. 10>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 12. 11>

제15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 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6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삭제 <2002. 12. 4>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

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제18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 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관계 규정에 따른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6. 10>

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 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6. 10>

제22조 삭제 <99. 10. 1>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8. 21>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 삭제 <2002. 12. 4>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소비자피해 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8. 21, 2008. 6. 13>

제29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30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24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30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제32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30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 규정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1, 2008. 6. 13>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10. 1, 2013. 6.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3. 6. 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 희망복지과장, 환경사업소장, 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축산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3. 6. 10, 2015. 6. 1, 2017. 4. 3, 2018. 2. 9, 2019. 9. 30, 2020. 11. 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 10. 1, 2013. 6.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01. 8. 21>

제3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 10. 1, 2013. 6. 10>

제3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6. 1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 10. 1, 2013. 6. 1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99. 10. 1>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제4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제4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오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10. 14. 조례 제50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21.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4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3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4 조례 제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③까지 생략

③④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문화공보담당관,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지역경제과장, 농림과장”을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복지정책과장, 환경사업소장, 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장, 농림공원과장”으로 한다.

③⑤ 부터 ⑤① 까지 생략

부칙 <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위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①④ 까지 생략

①⑤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①⑥ 부터 ②⑤ 까지 생략

부칙 <2013. 6. 1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5 까지 생략

②6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7 부터 ③3 까지 생략

부칙 <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농림공원과장”을 “농식품위생과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오산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8. 2. 9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9. 9. 30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6 조례 제18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98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농식품위생과장”을 “농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